

제4.18호

### 행정명령

#### 뉴욕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뉴욕주 전역의 재난 비상 사태 지속 선포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인력난이 발생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심각한 인력난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을 올바르게 돌볼 수 있는 능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병원 및 의료 시설이 제역할을 하려면 즉각적으로 직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뉴욕주 법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로써 행정명령 제4호에 명시되고 후속조항에 계속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 재난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이에 따라 행정명령 제4호 및 후속조항에 포함된 조건, 약관 및 효력 정지를 2023년 3월 23일까지 이어갑니다. 단, 다음과 같은 법률 정지 및 수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교육법(Education Law) 6524항, NYCRR 8장 60.7항, NYCRR 제10장 부속조항 (g) 405.4 (1)절. 의학 교육 연락 위원회(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또는 미국 접골 연합(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으로부터 의학 교육에 대한 교육 인증을 받았거나 의학 대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2021년 또는 2022년 졸업하는 의사가 뉴욕주 또는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면허를 가진 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512항부터 6516항, 6524항 및 NYCRR 8장 60부. 2021년에 뉴욕주에 있는 등록 또는 공인된 의료 프로그램을 졸업한 자가 이러한 졸업생의 의료 행위가 언제나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된 의사에 의해 관리 감독 받는다면 무면허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보건국장이 정한 조건에 따라 일반 병원에서 자격을 갖춘 자원 봉사자 또는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다른 종합병원과 관련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0장의 405.3항 세부조항 (b).

- 최소 1년의 대학원 의학 교육을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이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0조 N.Y.C.R.R. 405.4항 세부조항 (g)의 단락 (2)의 하위 단락 (ii)은 면허가 없는 졸업생이 최소 1년의 대학원 의학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2023년 2월 21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